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장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6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문장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우, 김기대, 김기덕,
김생환, 김인호, 김재형,
김정태, 김제리, 김춘례,
김평남, 김혜련, 박기열,
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
성흠제, 송아량, 송재혁,
송정빈, 양민규, 유 용,
유정희, 이광호, 이상훈,
이정인, 이태성, 이호대,
임종국, 장상기, 장인홍,
전병주, 전석기, 정진철,
채유미, 최 선, 최웅식,
최정순, 한기영, 황규복
의원(39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 관내 여자 중·고등학교의 학칙(학교규정)을 살펴보면 학생의 복장을 규정함에 있어 속옷의 색과 무늬,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여,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.
- 또한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서는 학칙 제·개정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, 학칙 제·개정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.

- 이에,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에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, 학칙으로 속옷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 사항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규칙으로 복장을 제한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함.(안 제12조제 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(생 략)</p> <p>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u>다만,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2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. <u><단서 삭제></u></p>